

# 결 정



헌 법 재 판 소

# 헌 법 재 판 소

## 제1지정재판부

### 결 정

사 건 2021헌마514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 
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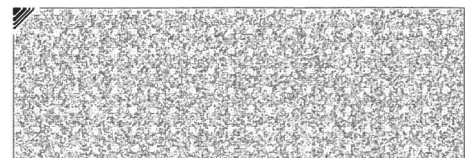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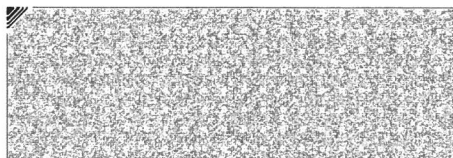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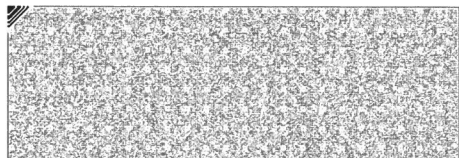
청 구 인 이선교 외 5  
 대리인 변호사 배보운 외 1

결 정 일 2021. 7. 6.

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.

재판장	재판관	유남석	<u>유</u>	<u>남</u>	<u>석</u>
	재판관	이은애	<u>이</u>	<u>은</u>	<u>애</u>
	재판관	김기영	<u>김</u>	<u>기</u>	<u>영</u>



# 정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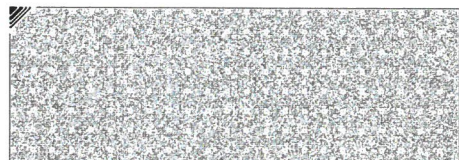
2021. 7. 7.

헌 법 재 판 소

법원서기관 김규필



1. 헌법재판소법 제36조(종국결정)에 따른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같은 법 제77조(전자서명 등)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2. 아래 바코드는 재판문서 정보 등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 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(<https://ecourt.court.go.kr>, 자료센터>FAQ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1-1000146022-D6A61

